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2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111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4.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년 2월 21일(금)	2025년 3월 4일(화)	2025년 3월 5일(수)	2025년 3월 6일(목)	2025년 3월 12일(수)	2025년 3월 15일(토) ~ 3월 18일(화)	2025년 3월 24일(월) ~ 3월 26일(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21.)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예)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해당 지역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부산 및 경남 거주 - 기타 지역 신청 가능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24.12.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가격을 판단 할 경우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르며, 분양권 등의 가격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 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를 무효처리 및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이 경우 청약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단, 부부를 제외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 청약자 / ② : 배우자 / ③ :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	결과
중복청약 처리 예시	당첨 [①] + 당첨 [②]	청약접수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고, 청약접수일이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청약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연령(연, 월, 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 유효)
	당첨 [①] ⊕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유효 / ②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당첨 [①] ⊕ 낙첨 [②]	① 유효
	당첨 [①] + 당첨 [③]	①, ③ 모두 부적격 처리
	당첨 [①] ⊕ 예비입주자 선정 [③]	① 부적격 / ③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당첨 [①] ⊕ 낙첨 [③]	①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문수로센트레벨에듀리체.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 할 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자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5년 3월 4일(화)	2025년 3월 5일(수)	2025년 3월 6일(목)	2025년 3월 12일(수)	2025년 3월 15일(토) ~ 3월 18일(화)	2025년 3월 24일(월) ~ 3월 26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 ~ 16:00)	방문계약 (10:00 ~ 16:00)
장 소	■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2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은행 영업점별 은행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2.1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신청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923호(2025.02.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4개동 총 3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5000037	01	084.8878A	84A	84.8878	26.5204	111.4082	60.3711	171.7793	27.7052	101	10	15	18	3	9	55	46	4
		02	084.9381B	84B	84.9381	26.8961	111.8342	60.4069	172.2411	27.7216	68	7	10	12	2	6	37	31	2
		03	084.7812C	84C	84.7812	27.5223	112.3035	60.2953	172.5988	27.6704	131	13	20	23	4	11	71	60	4
		04	084.9832D	84D	84.9832	29.2122	114.1954	60.4390	174.6344	27.7363	68	6	10	12	2	6	36	32	2
	합 계										368	36	55	65	11	32	199	169	12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시설별(아파트, 상가)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니,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가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m²) ÷ 3.3058)
-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세대별 분양가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 시
								계약 시	2025.04.21.	2025.08.20.	2026.02.20.	2026.08.20.	2027.02.22.	2027.07.20.	2027.11.22.	
84A	101	101동 1, 2호 104동 1, 2호	1층	1	222,457,695	476,542,305	699,000,000	10,000,000	24,95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44,650,000
			2층	4	230,095,728	492,904,272	723,000,000	10,000,000	26,15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253,050,000
			3~4층	8	235,187,749	503,812,251	739,000,000	10,000,000	26,95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58,650,000
			5~9층	20	242,825,782	520,174,218	763,000,000	10,000,000	28,15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67,050,000
			10층 이상	68	250,463,814	536,536,186	787,000,000	10,000,000	29,35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75,450,000
84B	68	102동 4호 103동 4호	2층	2	232,005,236	496,994,764	729,000,000	10,000,000	26,45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3~4층	4	237,097,257	507,902,743	745,000,000	10,000,000	27,25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60,750,000
			5~9층	10	244,735,290	524,264,710	769,000,000	10,000,000	28,45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69,150,000
			10층 이상	52	252,373,322	540,626,678	793,000,000	10,000,000	29,65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77,550,000
84C	131	102동 2, 3호	1층	4	222,139,444	475,860,556	698,000,000	10,000,000	24,9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44,300,000

		103동 2, 3호	2층	4	229,777,476	492,222,524	722,000,000	10,000,000	26,1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52,700,000
			3~4층	8	234,869,498	503,130,502	738,000,000	10,000,000	26,9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58,300,000
			5~9층	20	242,507,530	519,492,470	762,000,000	10,000,000	28,1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66,700,000
			10층 이상	95	250,145,563	535,854,437	786,000,000	10,000,000	29,3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275,100,000
84D	68	102동 1호 103동 1호	2층	2	207,818,133	445,181,867	653,000,000	10,000,000	22,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3~4층	4	212,910,155	456,089,845	669,000,000	10,000,000	23,45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34,150,000
			5~9층	10	220,548,187	472,451,813	693,000,000	10,000,000	24,65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42,550,000
			10층 이상	52	228,186,220	488,813,780	717,000,000	10,000,000	25,85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50,95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8878A	084.9381B	084.7812C	084.9832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 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수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1~6회차),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추후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용도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우선 연체료가 공제되고, 연체료 공제 후 잔액으로 미납 계약금 또는 중도금 원금이 납부 순서에 따라 차감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 이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을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및 고지서상의 명의 여부에 관련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 금액 납부 불이행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자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할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의 법인이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2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3	1	8
	중소기업 근로자	2	2	3	2	9
	장애인	3	1	4	1	9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10	7	13	6	3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	10	20	10	55
신혼부부 특별공급		18	12	23	12	65
생애최초 특별공급		9	6	11	6	3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4	2	11
합 계		55	37	71	36	19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유형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제외)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head><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신청자,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	<table><tr><th>구 분</th><th>해당기관</th><th>청약통장 구비여부</th></tr><tr><td>국가유공자</td><td>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td><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tr><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td><td>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td></tr><tr><td>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d>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td></tr><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td>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td></tr><tr><td>장애인</td><td>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tr></table>	구 분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구 분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입주자 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애인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55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추첨] ▪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5	
		미성년 자녀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사·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주민등록표 등·초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4) 무주택 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청약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30세인 청약자와 만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32세인 무주택인 청약자와 만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5) 해당 사·도 거주기간 산정 : 청약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사·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35세인 청약자 계속해서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8세인 청약자 15년 전부터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35세인 청약자 3년 전부터 해당 사·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65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1.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

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토지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유자녀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2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본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합산 불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1.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공급 비율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잔여 세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노부모부양자 신청자격 불인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순위</th><th>주택형</th><th>청약관련 신청자격</th></tr><tr><td>1순위</td><td>전용 60㎡ 초과 85㎡ 이하</td><td>■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td></tr><tr><td>2순위</td><td>전 주택형</td><td>■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td></tr></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확인 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 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④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⑤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 + 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형별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분양권①)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분양권②)	분양권 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A주택	100	200 (경쟁)	100	100	×	×	×	• 분양권① 주택 소유
B주택	100	200 (경쟁)	100	80	×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
C주택	100	50 (미달)	50	30	50	20	70 (50+2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
D주택	100	50 (미달)	50	50	50	×	5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 잔여세대 추가계약(분양권②) :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 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IV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3.0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5.03.05.(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3.06.(목)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2.(수) ~ 2025.03.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3.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3.1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①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⑦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3.24(월)~2025.03.26(수) (10:00~16:00) - 장소 -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건본주택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유의사항

■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사전서류 제출 기간	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5.03.15.(토) ~ 2025.03.18.(화) (10:00 ~ 16:00)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건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번지)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특별/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특별/일반공급)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미제출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당첨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자격검증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표 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다자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 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제53조 9호(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경우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전년도(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전년도(2023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전년도(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20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전년도(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판판매원		① 전전년도(202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전년도(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전전년도(20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및 세무서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	--	--------------

[표 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서 류 구 분	해 당 자 격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소유자	① 해당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재산세 납부내역 ③ 해당 보유 부동산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공시지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홈텍스 / 시가표준액 : 위텍스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텍스 ③ 해당 사이트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단, 공인인증서 지참 후 건물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해당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

[표 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건분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제53조 9호(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3.24.(월) ~ 2025.03.26.(수) (10:00 ~ 16:00)	건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1번지)	1551-1117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청약신청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2056-5552-1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 수입인지 세액 기준(계약자 부담액은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청약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대출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5%(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대금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23,500,000	2,350,000	21,150,000	
84B	23,500,000	2,350,000	21,150,000	
84C	21,500,000	2,150,000	19,350,000	
84D	24,700,000	2,470,000	22,230,000	

2.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2056-5557-0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대금에 대한 계약금, 잔금은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각 세대별 상이)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수납계좌와 다름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적법하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고, 거실, 침실 등의 외부창호, 출입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확장형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 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 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 외부 창호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창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기에 접하는 창호(거실,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등) 및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 되는 안방 발코니(84D 제외), 주방 발코니 등에는 실내외 온도차 및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및 단차 발생, 우물 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고,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비확장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정 등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 배관 등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 등의 전기 마감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현관 중문	리니어 모터 자동중문	84A, 84C, 84D	200,000	1,660,000	1,860,000
	양개 수동 중문	84B	100,000	1,070,000	1,170,000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하부 레일은 바닥 마감재보다 돌출됩니다.

※ 84A, 84C, 84D타입은 현관 중문 유상옵션 미선택시, 신발장 측면에 벽체가 시공됩니다.

※ 현관 중문의 유리도어에는 비산방지필름이 시공됩니다.

※ 본공사시, 바닥 프레임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실/주방/복도 바닥재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바닥 마감재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600x600) + 안방, 침실1, 침실2 광폭 강마루	84A, 84B	100,000	1,200,000	1,300,000
		84C	100,000	1,110,000	1,210,000
		84D	100,000	1,180,000	1,280,000

※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시, 타일과 각 침실의 광폭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유상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타일류는 본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표면의 패턴은 자재 자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자재의 하자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특성상 안내문 등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샘플과는 색상, 패턴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미선택시, 거실, 주방, 복도의 바닥은 침실과 동일한 일반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 시,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낙상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거실/복도 시트판넬(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트 판넬	거실 소파 뒷벽 + 복도 아트월 부위	84A, 84B	100,000	1,400,000	1,500,000
		84C	100,000	1,180,000	1,280,000
		84D	100,000	1,260,000	1,360,000

※ 시트판넬 유상옵션 선택시, 시트판넬 범위가 타입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트판넬 유상옵션 미선택시, 시트판넬 범위에는 거실 벽지로 시공됩니다.

(4)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조명 업그레이드	거실 우물천장 간접/매립등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등 + 복도 간접등 + 안방, 침실1, 침실2 간접등 + 안방, 침실1, 침실2 2구 멀티등 변경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84A	400,000	3,920,000	4,320,000
		84B	400,000	3,780,000	4,180,000
		84C	400,000	3,760,000	4,160,000
		84D	400,000	4,370,000	4,770,000

※ 조명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으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안방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등박스 내 조명이 설치되며,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직접부착형 조명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시, 84D타입은 알파룸도 포함됩니다.

(5) 시그니처 키친(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그니처 키친	선택 1.	라인조명 + 마감재 변경(상판/벽) + 후드 + 싱크수전 + 상부장 플랩장(블럼,조명) + 양면수납 아일랜드 + 다이닝 우물천장 직부등/간접조명	84A	500,000	4,620,000	5,120,000
			84B	500,000	4,060,000	4,560,000
		라인조명 + 마감재 변경(상판/벽) + 후드 + 싱크수전 + 상부장 플랩장(블럼,조명) + 양면수납 아일랜드	84C	500,000	4,510,000	5,010,000
			84D	500,000	4,370,000	4,870,000
	선택 2.	라인조명 + 마감재 변경(상판/벽) + 후드 + 싱크수전 + 상부장 플랩장(블럼,조명) + 양면수납 아일랜드(대형 길이 확장)	84C	1,000,000	10,430,000	11,430,000
			84D	1,000,000	10,810,000	11,810,000

※ 다이닝 우물천장 직부등/간접조명은 84A, 84B만 해당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그니처 바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그니처 바스	선택 1.	바닥(포세린타일300x300) + 벽(포세린타일600x600) + 욕실장 + 하부조명 + 도기/수전/액세서리 업그레이드 + 복합환풍기 + 샤워부스(공용욕실/부부욕실)	84A	600,000	5,550,000	6,150,000
			84B, 84C, 84D	600,000	5,520,000	6,120,000
	선택 2.	바닥(포세린타일300x300) + 벽(포세린타일600x600) + 욕실장 + 하부조명 + 도기/수전/액세서리 업그레이드 + 복합환풍기 + 욕조(공용욕실) + 샤워부스(부부욕실)	84A	700,000	6,160,000	6,860,000
			84B, 84C, 84D	700,000	6,200,000	6,900,000

※ 시그니처 바스 유상옵션 1안 선택시, 공용욕실/부부욕실 모두 샤워부스 형태로 설치됩니다.

※ 시그니처 바스 유상옵션 2안 선택시, 욕조 측면에는 엔지니어스톤으로 마감됩니다.

(7) 시그니처 스타일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시그니처 스타일룸	선택 1.	간살 슬라이딩 도어(매립형) + 벽판넬 시스템선반 + 라인 조명 + 천장형 제습기 + 화장대/불박이장	84A, 84B	400,000	3,700,000	4,100,000
			84C	400,000	4,040,000	4,440,000
			84D	400,000	3,230,000	3,630,000
	선택 2.	간살 슬라이딩 도어(매립형) + 벽판넬 시스템선반 + 라인 조명 + 천장형 제습기 + 불박이장 + 스타일룸 위치 알파룸으로 변경	84D	500,000	4,290,000	4,790,000

※ 시그니처 스타일룸 유상옵션 선택시, 타입별 불박이장 및 시스템선반 사이즈가 상이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타입 시그니처 스타일룸 유상옵션 선택시 1안과 2안은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중복 불가)

※ 84D타입 시그니처 스타일룸 유상옵션 2안 선택시, 1안과 다르게 화장대는 미설치 됩니다.

(8)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인덕션 (3구)	삼성전자(NZ63T5701AK)		모든 주택형	100,000	490,000	590,000
빌트인 전기오븐	삼성전자(NQ36A6555CK)		모든 주택형	100,000	230,000	33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DW60T7065SS)		모든 주택형	100,000	780,000	880,000
빌트인 정수기	쿠쿠전자(CP-AAS100BDS)		모든 주택형	100,000	950,000	1,050,000
주방 키친핏 냉장고+상부장	주방 키친핏 3도어(냉동,냉장,김치)+상부장(플랩장) 1. LG전자 BC1F2AA(냉동전용고) 2. LG전자 BC1L2AA(냉장전용고) 3. LG전자 BC1K3AAC(김치냉장고)		모든 주택형	500,000	4,380,000	4,880,000
주방 TV	코스텔(CSK-135AA)		모든 주택형	100,000	530,000	630,000
전동빨래건조대	씨넷(INUS-ED700)		84A, 84B, 84C	50,000	110,000	160,000

※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아파트 기본 제공 서비스인 'LGU+ 홈IoT'와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IoT 서비스(삼성전자-SmartThings, LG전자-ThinQ 등)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타입 및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시 용기(냄비, 프라이팬)가 인덕션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주방 키친핏 냉장고+상부장 유상옵션 선택시 하부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미선택시 냉장고를 배치할 공간과 상부장(여닫이장)만 제공됩니다.
- ※ 키친핏 냉장고는 세미 빌트인 제품으로, 가구와 제품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 ※ 가전제품의 경우 본공사투입시점에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키친핏 냉장고+상부장 유상옵션은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 세트로만 선택가능하며 컬러변경은 불가합니다.
- ※ 가전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유무,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D타입의 경우 확장시 다른 타입과 달리 안방 비확장 발코니가 없으므로, 전동빨래건조대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9)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1.	3대 (거실, 주방, 안방)	모든 주택형	400,000	3,480,000	3,880,000
	선택 2.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4A, 84B, 84C	600,000	5,830,000	6,430,000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84D	800,000	6,950,000	7,75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의 기본형으로 설치되어 난방, 공기청정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미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옵션 공급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84D 알파룸 설치 제외 불가)
-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공되는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냉방 부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는 구간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청정환기 시스템	선택 1.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장치 업그레이드	모든 주택형	100,000	810,000	910,000
	선택 2.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장치 업그레이드 + 각실 제어시스템(스위치) 추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84A, 84B, 84C	300,000	2,320,000	2,620,000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장치 업그레이드 + 각실 제어시스템(스위치) 추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84D	300,000	2,750,000	3,050,000

-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업그레이드 유상옵션의 제조사는 경동나비엔 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장비는 설치되지 않으며(장비 업그레이드), 상기 옵션 금액은 기본 장비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되며, 이로 인해 장비가 설치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더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장비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공기질 센서가 탑재된 에어모니터를 별도로 지급하며, 청정환기 각실제어시스템은 에어모니터를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기 각실제어시스템은 각실에 설치되는 룸

콘에 공기질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 청정환기 시스템 2안 (각실제어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각실에 각실제어를 위한 룸콘(스위치) 및 전동디퓨저가 설치되고 전동디퓨저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 시스템 2안 (각실제어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각실제어는 84A, 84B, 84C는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로 구성되고, 84D는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으로 구성되니 각실제어 변경 및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 청정환기 시스템 2안 (각실제어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부속실(드레스룸, 팬트리등)에 설치된 전동디퓨저 제어는 해당실에서 가까운 실과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 ※ 전열교환기 장비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11) 외부창호 유리난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주택형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유리난간	유리난간형 창호 (거실, 발코니1)	84A, 84B, 84C	100,000	1,140,000	1,240,000
	유리난간형 창호 (거실, 안방)	84D	100,000	1,310,000	1,410,000

- ※ 유리난간 유상옵션 선택 시 84A, 84B, 84C 타입의 경우 거실과 발코니1(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되며, 84D 타입의 경우 발코니1(다용도실)이 아닌 안방창호에 설치됩니다.
- ※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쪽만 개폐가 가능하고,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창쪽은 개폐가 불가한 고정창(이중창의 경우 외부창호)으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리난간 적용 창호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중도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2056-5564-6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 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시 기본 가전제품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유무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류,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및 가구장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전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수입인지 세액 기준(계약자 부담액은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VIII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 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3월 예정(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 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단지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 일 이상 부여할 예정 입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 예정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GX룸,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경로당,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IX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조경석 및 방음벽 등의 종류, 색상, 디자인,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및 옥외주차장 상부 보행 가로 데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인접 건물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기존 전신주 및 맨홀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레벨, 지하층 충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계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경계석, 계단, 마운딩(구름)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 84D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84A, 84C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 공통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영구음영 포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공간 명칭, 단지 주부출입구, 주동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시에는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 및 주차장 상부 보행데크(1층 외부공간)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충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콘크리트 옹벽, 전석, 조경석, 울타리, 철재난간, 방음벽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 내 전신주 단지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 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구조특성상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B 및 C,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시 검토로 인하여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또는 입주자가 점용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승강기와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므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평면 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 부서공간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동주변으로 우수 도피관이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캐노피, 입면 장식, 옥상 구조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단지 주차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피해 및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부 출입 통과동선 및 보행로 등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보일러,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며, 이를 단지모형 및 CG 등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북동측에는 발전기용 D/A(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인입을 위해 단지 내 전기시설물(전주 또는 패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층 남측, 103동 남측과 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층 서측, 104동 동측, 외부승강기 남측에는 커뮤니티의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단지 내 3개소(101동 서측 1개소, 103동 동측 1개소)로 아파트용 2개소, 근린생활시설 전용 1개소(지하1층)가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램프(장애인 겸용)의 위치, 형태, 크기, 길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은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는 지상1층에 설치되오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당 사업지 대지경계 밖에 조성된 차도 및 보행로는 당 사업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상도로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 시 인접 주변도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 시에는 도로의 레벨, 폭, 방향 등이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 사업지와 연관은 없습니다.
- 단지 내 남측에 설치될 승강기는 단차 극복을 위한 지하1층~지상1층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동과 103동은 남측에 인접한 아파트로 인해 조망 및 일조의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건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단차로 인해 각동별 출입구의 진입방법(필로티, 무단차, 경사로, 계단 등)은 상이하며 계약전 모형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지상1층에 설치되고,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 각동별로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홀, 필로티 평 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위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피뢰설비, TV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눈부심, 풍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전실구간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단위세대 현관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통기관, 환기설비 등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기능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뽕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 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경로당, 어린이집 등) 등이며 내외부 시설물의 내용 및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 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나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 102동 지하 1층에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103동 지하 1층에 맘스카페, 지상 1층에 어린이집, 104동 지하 1층에 작은도서관, 지상 1층에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인접세대(수직, 수평)에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에 접하는 도로통행로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주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경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휴게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비상차로 및 보행로, 소방활동공간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조경,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104동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외부구간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는 등에는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 인근으로 소방차량 전용구역이 구획되며, 단지 특화를 위해 일부 구간이 친환경 포장재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4동은 지하 3개층(지하1층~지하3층 주차장), 102, 103동은 지하2개층(지하2층~지하3층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통행로 유효 높이는 지하2층, 지하3층 2.3m,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단지남측 차량출입구만 2.7m 단 동측 차량출입구는 2.3m로 진입불가)로 출입구에 따라 차량 높이가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4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받은 현장으로 당시 주차장법 기준에 따라 일반형 2.5X5m 확장형 2.6X5.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화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기둥,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뽕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랜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 차량출입구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13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과 공동주택 주차구역은 차단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에 전기차 급속, 완속 충전설비가 설치되고, 수량과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용요금 및 유지관리 관련 입주자 협의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부출입구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는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지하1층 동측 차량 진출입구 인근에 총 1개소가 설치계획 예정입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은 지상 1층 102, 103동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2,103동 지하1층에 위치하며 전면 보행로 레벨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외부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인해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13대)이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공시 주차구획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기타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로, 지상 주차 및 회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악취,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내에는 기본품목, 확장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후드, 전기오븐, 쿡탑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는 Mock-up 세대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안방,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부 및 단위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매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중문 및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선택시)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시공부분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기준층 층고는 2.8M, 천장고는 2.3M(거실 우물천장고는 2.41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조대리석류(주방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 및 세라믹타일류(주방상판 등)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 공사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일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찌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호실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원하시는 가전 제품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위시타워 등)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보일러 유지보수에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하자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품목은 공간을 반드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발코니2(84D)는 발코니1)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쿠팡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을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내 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수납장) 및 주방가구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가구의 크기나 마감자재, 레이아웃 및 제품품목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건본주택과 달리 주방가구 배치 및 설치수납가구의 크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구가 설치되지 않는 부위는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내부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수납장),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TV(유상옵션), 조리기구선반, 약세서리, 빌트인 제품(쿠팡, 후드 등) 등은 평형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시 제품 사양 및 제조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설비는 그릴을 통해 유입되는 우수 및 시스템에어컨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희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2(84D는 발코니1)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에는 해당세대의 하향식 피난구 문(철재문) 뿐만 아니라 윗층세대의 피난구 투영 바닥부분을 포함하여 피난공간 전체에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문은 철재문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 재료, 성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그릴창으로 설치되며,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확장시)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단위세대 평면 및 해당법령에 따라 소방배관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로 인해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 시공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시스템 가동시 운전소음이 단위세대 내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며(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설치하지 않음), 상하층간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D타입의 경우 확장시 다른 타입과 달리 안방 비확장 발코니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구조계산 및 안정성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함문 제외)은 착색프레임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와 문 및 기타 창호부속자재의 사양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 부입면계획에 따라 개수, 디자인, 형태, 규격,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난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유리난간일체형 창호(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철재난간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터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창호 난간에는 국기봉 꽃이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리난간일체형 창호 선택 시 해당 세대에는 국기봉 꽃이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동출입구에 설치)
- 세대 내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에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2~15층 승강기홀의 공용창호에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에 세대가 없는 라인의 2층 세대의 경우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가 되며, 창호도 관련법규에 맞게 다른층과는 달리 여닫이 창호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계/전기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액세서리류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저,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조명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선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환기용 디퓨저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재질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난방은 거실 및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선 선택시 미시공)단,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제조사별 판매가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 호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욕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벽에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윗층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비확장형, 확장형)는 본 공사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 주방 액세서리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의 싱크대의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실내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및 램프의 개수, 위치 등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에 따라 일부 타입에 한해 발코니2(84D는 발코니1)에 세탁기와 건조기 동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가전 설치품목은 공간을 사전에 실측 확인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 발코니2(84D는 발코니1) 창호방향에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 설치시 창호 개폐에 간섭될수 있으며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시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환기설비인 직배기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 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입주시 세대 내 설치 예정인 전열교환기 제품은 제조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 시스템은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측정의 방법은 관련법에 준수하여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전세대 거실과, 최저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각 실(주방 창고 등 작은창 제외)에는 방법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101~104동에 고루 배치되며 동별 수량 및 용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유상옵선)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홈IoT 시스템의 경우 LG U+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회사의 유료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LG U+가 지원하는 홈IoT 전용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옵선)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의 상부층 단위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은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물 입면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차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및 C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BI 및 루버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BI 및 동호수는 경관조명으로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외벽에 보일러 연도,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및 주방 후드 배기구, 욕실 직배기 시스템 환기구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타공시공이 이루어지며 외부로 연도가 설치되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화장실 직배기구,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및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뿔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 창호 (크기, 모양, 색, 사양 등), 난간 (크기, 모양, 색, 재질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 재질, 사양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등의 위치, 형태, 크기, 자재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저층부 석재, 옥탑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세대로 인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 사인물 · 위성안테나 ·피뢰침, 기간사업자 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 대지 주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거나,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고층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를 포함하는 인근 공동주택 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교는 **신정초등학교**를 증축하여 배치할 계획이나, 향후 인근 개발사업의 추이에 따라 학생배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아파트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기 학교 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홍보물

- 견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사위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확장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건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항,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정 등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제시된 내·외부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단종),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월패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컷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문 및 그릴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및 개폐방향은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지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도로, 용역 등)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홈페이지, 카달로그, 모형 및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당 건본주택 전시 세대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뷰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모형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문 및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문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건본주택건립 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이미지제공)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중 또는 실행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동호수가 추첨 배정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시행자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개별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기타 계약자 안내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 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 용	각 세대 내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제7조제3항 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미 적 용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최초 사업시행인가(2022.04.14) 기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준수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설계범주(C), 동적해석법	Ⅶ-0.2208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2층, 지하3층 2.3m(주출입구),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유효 높이 : 지하1층 단지남측 차량출입구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단지동측 차량출입구는 2.3m(택배차량 진입불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0400호	182,866,4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상세내용은 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주)서린디앤씨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신우전기엔지니어링
금 액	2,040,063,410원	154,000,000원	561,165,3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 호	(주)영우디앤씨	동부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1, 902호 (역삼동, 프라자654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3583253	110111-0005002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홈페이지(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551-1117

시행 **youngwoo D&C**
(주)영우디앤씨

시공  **동부건설**